## 7. 스티로폼 포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

성별 여 나이 61세 직종 화학제품제조업 작업관련성 낮음

- **1. 개요:** 근로자 문○○은 57세 때인 2001년 9월 14일부터 ○○산업(주)에 근무하다가 2005년 6월 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(선암)으로 진단받았다.
- 2. 작업환경: ○○산업(주)는 총 85명의 근로자가 전자제품 완충재용 스티로폼을 제조하고 있다. 근로자 문○○이 20년간 계속 하였던 스티로폼 포장작업은 건조가 끝난 후 넘어온 스티로폼을 사무용 투명 OPP 테이프로 종이 PAD에 부착하는 작업이다. 잘못된 금형에 의해 생산된 일부 제품을 수정할 경우 오공본드를 사용하는데, 그 빈도는 월 하루 1-2시간 정도라고 한다. 근로자에 의하면 10년 전까지는 테이프 대신 현재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본드로 스티로폼과 종이 PAD를 붙였으며, 처음에는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한다.
- 3. 의학적 소견: 문〇〇은 흡연 및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, 3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 중이라 한다. 9개월 전부터 시작된 기침이 2005년 2월경부터 심해져 보건소에서 흉부방 사선사진을 찍은 결과 결핵은 아니지만 이상이 있으니 병원에 가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. 그러다가 2005년 5월 30일 방사선과의원에서 흉부방사선검사를 한 결과 좌상엽의 폐암이 의심된다고 하여 대학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였다. 경피세침 흡인 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확인되었다. 또한 PET-CT에서 좌상엽의 폐암이 우측 부신 및 우측 골반뼈에 전이된 소견이 있었다(Stage IV). 이에 6월 15일 퇴원한 후 8월 16일 재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였다.
- 4. 결론: 이상의 조사결과 근로자 문〇〇은,
- ① 폐암(선암)으로 확진되었고.
- ② 폐암으로 진단받기 20년 전부터 스티로폼 포장작업을 하면서 본드를 취급하였지만,
- ③ 본드나 스티로폼의 원료인 폴리스티렌 및 다른 구성성분이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,

근로자 문○○옥의 폐암이 과거 20년간 수행한 스티로폼 포장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.